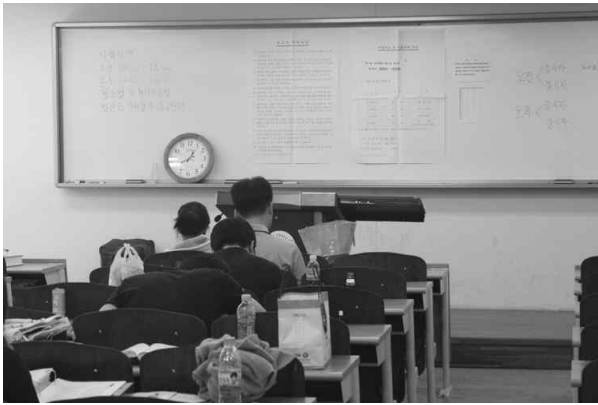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시행
2011. 6.22~25. 시행



<사법시험 2차시험장 풍경>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치러졌다.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6개 대학에서 실시된 이번 사법시험은 전체적으로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평년수준의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일부 과목은 예상외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고, 문제의 유형도 기존과 달리 점수가 세분화되고, 이론적인 지식뿐 아니라 실무적인 지식까지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당황한 수험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간략히 중요과목별로 이번 시험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8월호의 특별기획,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모범답안과 교수강평 참고). 첫날, 헌법과 행정법은 평이한 출제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헌법

의 경우 일부 설문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첫날 시험이라 시간안배에도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의 경우 경원자소송에서 원고적격, 재결소송, 부판에 대한 다툼 등 전형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답안작성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둘째날, 상법의 경우 보험법대신 총칙부분에서 출제되었고, 운송주선인 문제는 다소 불의타였다는 것이 많은 수험생들의 의견이고, 매년 큰 문제로 출제되는 회사법은 무난했고, 아울러 어음법에서도 평소 쟁점으로 많이 공부하는 기한후배서가 출제되어 변별력을 가리기는 어려운 출제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시험문제가 주어지고 난 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초안을 잡는데 할애를 해야할 정도로 쟁점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2문의 2의 경우는 쟁점을 몰라 답안작성에 애를 먹었다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날, 형법의 경우 2차 시험 경험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이한 출제로 파악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절차법이고, 큰 틀을 공부해두면 효자과목으로 받아들여지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실무적이면서도 난해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재전문, 공소시효 등 어려운 쟁점이 연속된 시험으로 평가된다.

넷째날, 민법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다소 쉬워진 출제로 보이기는 하지만, 쟁점의 추출과 사안의 적용에 있어 누가 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나 민법에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눈에 보이는 쟁점들만 나열하는데 그친 경우가 많아 다른 과목에 비해 변별력이 있는 출제로 평가받고 있고, 당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험은 다소 쉽게 느껴졌던 시험장 분위기와는 달리 문제에 대한 복기 과정에서 자신이 찾지 못한 쟁점들이 의외로 많아 걱정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보인다. 더운 여름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